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363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23일

발의자 : 강성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 나.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의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 애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봉금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봉금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봉금액의 2배
13급내지 14급	월봉금액의 1배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조기퇴직수당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 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전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서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 등)

급의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